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2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염태영

김승원 · 김성회 · 김준혁

김영환 • 모경종 • 이상식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 ·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.

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 와 행·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 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 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마.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(안 제9조).
- 바. 도지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(안 제10조).
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 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특례시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.
 - 2. "도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도의 책무) ① 국가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·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특례시의 책무)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 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특례시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특례시의 지원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 - 3. 특례시의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
 - 4. 그 밖에 특례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의견을 수 렴한 후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

-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기본계획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다.
- 제8조(사무 특례)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- 제9조(비용의 지원)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재정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특례시의 경우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 특례 등의 적용례) 제10조제2항 및 별표 제19호는 경상남 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 및 제6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[별표]

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(제8조 관련)

- 1.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.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
- 3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
- 4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
- 5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56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70조, 제70조의2 및 제73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, 조사·측량, 조성계획 승인·승인취소, 준공검사 및 관광특구 지정, 조사·분석의뢰 및 평가 등
- 6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7조제1호가목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배수장, 방조제 및 제방의 등록·폐지
- 7.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

- 8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등
- 9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, 제3조의2, 제7조의6 및 제7조의7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수립에 대한 의견제출,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요청
- 10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, 제5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부 업등 등록・등록갱신・변경등록, 등록증 반납,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수수료 수납, 영업정지・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・징수 등
- 11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3,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, 제26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44조, 제46조, 제50조의3, 제52조의2, 제52조의3, 제53조,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·지정해제 및 개발·운영 등
- 1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5조, 제56조 및 제60조제1항·제7항·제8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,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,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·관리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, 개선명령, 조업정지 및 폐쇄 명령
- 1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 적지역의 지정 협의

- 1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, 등록의 말소 및 보조금의 지원·환수 등
- 15.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 구역 지정·고시,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·신고, 산림보 호구역 관리 및 지정해제
- 16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5조 및 제6 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 치
- 17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[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(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)인 산지로서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,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]의 절차 및 심사
- 18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
- 19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4 및 제21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및 정원조성계획의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·승인취소, 수목원 및 정원의 등록·등록취소, 시정요구 및 청문 등
- 20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른 폐기물처

분부담금 부과 · 징수 등

- 2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6조, 제40조, 제41조,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, 사용약관 신고, 시설 사용료 인가, 터미널 위치변경 인가 및 사용명령
- 22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 조 및 제4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 및 강 화
- 2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8조, 제14조, 제17조, 제23조, 제63조, 제65조, 제65조, 제66조의2, 제67조, 제68조의3, 제69조, 제72조, 제72조의2 및 제78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, 공사업의 등록, 공사업의 양도·합병·상속 등의 신고, 공사업자의 폐업신고, 공사업자의 지도·감독, 시정명령, 영업정지와 등록취소,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, 이해관계인의 신고, 청문, 등록 등의 공고 및 공사업 현황등의 보고 등
- 24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, 제49조 및 제61조에 따른 생태계보전 부담금 부과·징수 등
- 25.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명령
- 26. 「주택법」 제58조, 제63조의2 및 제72조제4항에 따른 분양가상한 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,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

수립 및 변경 승인 등

- 27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8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·기관별 정원의 책정
- 29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(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30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5항·제6항, 제39조의2, 제46조 및 제46조 및 제46조 및 제46조 및 의2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 확인 및 변경확인,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, 폐기물 처리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·징수
- 31.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,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, 신고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3조제1항제2

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, 같은 법 제115조제2 항에 따른 출입검사·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 대료(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)의 부과 ·징수

32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·징수